

이상용 선생님 「클로저 민법총칙 핸드북」  
2판 사용자를 위한 정오표① (2023-01-31)

추후 발견되는 오타자, 오답, 수정사항 등도 신속히 업데이트 해드릴 예정입니다.

p.23

기존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출 4.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.(×) <소방간부 2022> ⇒ ★ 취소할 수 있다(§10④).
수정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기출 4. 피성년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성년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.(×) <소방간부 2022> ⇒ ★ 취소할 수 없다(§10④).

p.89

기존	3. [관련기출] 단층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,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.(×) <경찰간부 2022>
수정	3. [관련기출] 단층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, 그 정착물은 토지의 부합물에 불과하다.(○) <경찰간부 2022>

p.200

기존	제158조 (연령의 기산점) 연령계산에는 출생일을 산입한다.
수정	제158조 (나이의 계산과 표시)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(滿) 나이로 계산하고, 연수(年數)로 표시한다. 다만,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(月數)로 표시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22. 12. 27.] [시행일: 2023. 6. 28.]

p.203

기존	2.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(대판 1982.2.23. 81누204). <법행 2008> <경찰경제 2019> <소방간부 2023> [관련기출①] 기간 기산의 초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.(×) <경찰경제 2019>
수정	2. 기간의 초일이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(대판 1982.2.23. 81누204). <법행 2008> <경찰경제 2019> <소방간부 2023> [관련기출①] 기간 기산의 초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기간은 초일부터 기산한다.(○) <경찰경제 2019>